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25. 9. 27.

발 의 자 : 허영 의원

찬 성 자 : 165인

수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내용이 제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, 재정경제위원회의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하며,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으로 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제1호·제3호·제4호, 안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7조제1항제1호자목을 삭제하고, 같은 호 차목을 자목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라목 중 “금융감독위원회”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“금융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재정경제위원회”를 “재정경제기획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안 부칙 제1조 단서 중 “제37조제1항제1호자목, 같은 항 제3호라목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”을 “제3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및 나목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 중 “재정경제위원회”를 “재정경제기획위원회”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.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 ----- ----- ----- ---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 (개정안과 같음)
1. 국회운영위원회	1. -----	
가. ~ 바. (생략)	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	가. ~ 바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사.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	사. (개정안과 같음)
<u>사.</u> (생략)	<u>아.</u> (현행 사목과 같음)	아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자.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	<u><삭제></u>
<u>아.</u> (생략)	<u>차.</u> (현행 아목과 같음)	<u>자.</u> (개정안 차목과 같음)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	2. (개정안과 같음)
3. 정부위원회	3. -----	3. (개정안과 같음)
가. ~ 다. (생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가. ~ 다. (개정안과 같음)
라. <u>금융위원회</u> 소관에 속하는	라. <u>금융감독위원회</u> -----	라. <u>금융위원회</u> -----

사항 마. (생 략) 4. <u>기획재정위원회</u> 가. <u>기획재정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<신 설> 나. (생 략) 5. ~ 11. (생 략) 12.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회 가. <u>산업통상자원</u> 부 소관에 속 하는 사항 나. (생 략) <신 설>	----- 마. (현행과 같 음) 4. <u>재정경제위원회</u> 가. <u>재정경제부</u>-- ----- ---- <신 설> 나. <u>국가데이터처</u> <u>소관에 속하는</u> <u>사항</u> 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 5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----- ----- 가. <u>산업통상부</u>-- ----- ---- 나. (현행과 같 음) 다. <u>지식재산처</u> <u>소관에 속하는</u>	-- 마. (개정안과 같 음) 4. <u>재정경제기획위</u> <u>원회</u> 가. (개정안과 같 음) 나. <u>기획예산처</u> <u>소관에 속하</u> <u>는 사항</u> 다. (개정안 나목 과 같음) 라. (개정안 다목 과 같음) 5. ~ 11. (개정안 과 같음) 12. (개정안과 같 음) 가. (개정안과 같 음) 나. (개정안과 같 음) 다. (개정안과 같 음)
--	---	---

	<u>사항</u>	
13. (생략)	13. (현행과 같음)	13. (개정안과 같음)
14. <u>환경노동위원회</u>	14. <u>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</u>	14. (개정안과 같음)
가. <u>환경부</u> 소관 에 속하는 사항	가. <u>기후에너지환경부</u> ----- -----	가. (개정안과 같음)
나. (생략)	나. (현행과 같음)	나. (개정안과 같음)
15. · 16. (생략)	15. · 16. (현행과 같음)	15. · 16. (개정안과 같음)
17. <u>여성가족위원회</u> <u>여성가족부</u> 소 관에 속하는 사항	17. <u>성평등가족위원회</u> <u>성 평 등 가 족 부</u> <u>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	17. (개정안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 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 22조의4 · 제22조의 5 및 제37조제1항 제1호사목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 개월이 경과한 날	② (개정안과 같음) 부 칙 제1조(시행일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	부터 시행하고, <u>제37조 제1항 제1호</u> 자목, 같은 항 제3호 라목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<u>재정경제위원회</u>,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,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.	----- <u>제37조 제1항 제4호</u>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2조(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 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<u>재정경제기획위원회</u>,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,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.
--	---	--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 하고,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4(국회기록원)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·분류·

정리·보존·평가·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.

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
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.

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“기획재정부”를 “재정경제부”로 하며,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

4. 재정경제기획위원회

나.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
다.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37조제1항제12호가목 중 “산업통상자원부”를 “산업통상부”로 하고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가목 중 “환경부”를 “기후에너지환경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.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

14.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
17. 성평등가족위원회

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
제49조의2제3항 중 “여성가족위원회”를 “성평등가족위원회”로 한다.

제57조제6항 단서 중 “여성가족위원회”를 “성평등가족위원회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의4·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3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

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기획위원회,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,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·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2조의4(국회기록원)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·분류·정리·보존·평가·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.</u> <u>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</u> <u>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.</u> <u>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</u>
<u>제22조의4(국회세종의사당) (생략)</u> 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국회운영위원회 가. ~ 바. (생략) <u><신 설></u> <u>사. (생략)</u>	<u>제22조의5(국회세종의사당) (현행 제22조의4와 같음)</u> 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 ----- -----. 1. ----- 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 <u>사.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<u>아. (현행 사목과 같음)</u>

<u>아.</u> (생략)	<u>자.</u> (현행 아목과 같음)
2.·3. (생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4. <u>기획재정위원회</u>	4. <u>재정경제기획위원회</u>
가. <u>기획재정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	가. <u>재정경제부</u> ----- -----
<u><신설></u>	<u>나. 기획예산처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
<u><신설></u>	<u>다. 국가데이터처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
<u>나.</u> (생략)	<u>라.</u> (현행 나목과 같음)
5. ~ 11. (생략)	5. ~ 11. (현행과 같음)
12. <u>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</u>	12. ----- -----
가. <u>산업통상자원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	가. <u>산업통상부</u> ----- -----
<u>나.</u> (생략)	<u>나.</u>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다. 지식재산처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
13. (생략)	13. (현행과 같음)
14. <u>환경노동위원회</u>	14. <u>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</u>
가. <u>환경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	가. <u>기후에너지환경부</u> ----- -----
<u>나.</u> (생략)	<u>나.</u> (현행과 같음)
15.·16. (생략)	15.·16. (현행과 같음)
17. <u>여성가족위원회</u>	17. <u>성평등가족위원회</u>
<u>여성가족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	<u>성평등가족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

② (생략) 제49조의2(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) ① · ② (생략)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, 국회운영위원회, 정보위원회, <u>여성가족위원회</u>,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. 제57조(소위원회) ① ~ ⑤ (생략)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,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한다. 다만, 국회운영위원회, 정보위원회 및 <u>여성가족위원회</u>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. ⑦ ~ ⑨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 제49조의2(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<u>성평등가족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 제57조(소위원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성평등가족위원회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⑦ ~ ⑨ (현행과 같음)
---	---